



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[시행 2021. 12. 13.] [조례 제2584호, 2021. 12. 13., 일부개정]

경상남도 남해군(재무과), 055-860-3152

제19조(사용·수익허가)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7. 10., 2015. 12. 4.>

1. 사용·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
2.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
3.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
4. 사용료 납부방법
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
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
7. 허가조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1877호, 2009. 7. 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080호, 2014. 11. 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140호, 2015. 12. 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219호, 2016. 12. 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440호, 2020. 2. 20.>(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480호, 2020. 9. 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495호, 2020. 12. 8.>(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529호, 2021. 5. 1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조례 제2584호, 2021. 12. 1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